



동국대학교 일반대학원 국어국문학과와

국립정치대학교 문학원 대만문학연구소 간의
복수학위협정서 (DUAL DEGREE AGREEMENT)



동국대학교 일반대학원 국어국문학과(이하 “국문학과”)와 국립정치대학교 문학원 대만문학연구소(이하 “대만문학연구소”)는 상호 신뢰의 원칙하에 복수학위 학생 교류를 위해 다음과 같이 협정을 체결한다.

1. 총칙

- 1.1. 본 협정서는 국어국문학과와 대만문학연구소와의 복수학위(Dual Degree)제도 운영을 위한 협정서이며, 석·박사학위과정에 재학 중인 학생교류를 대상으로 한다.
- 1.2. 양교는 학생의 학업능력, 인성, 언어능력 등을 고려하여 복수학위 과정 학생을 선발한다.
- 1.3. 양교에서 정하는 졸업기준을 각각 이수하여야 하며, 파견 시에는 파견교의 학사제도를 따른다.
- 1.4. 양교는 파견교에서 취득한 학점을 상호 인정하고 소정의 학위청구 논문절차에 따라 석, 박사학위를 수여한다.
- 1.5. 양교는 성적 또는 학위논문심사 결과 통보 등 학위취득에 필요한 행정 사항에 양교의 학사제도와 일정을 존중하여 상호 협조한다.

2. 학생 선발 및 파견

- 2.1. 복수학위과정에 참여하는 학생은 성적이 우수하고 파견교의 학점

이수에 필요한 언어능력을 가진 자에 한하며, 소속교에서 추천하고 파견교에서 확정한다.

- 2.2. 파견교에서는 추천한 학생의 교육과정 이수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한하여 거부할 수 있다.
- 2.3. 양교는 학생들의 선발에 필요한 모든 정보, 비자를 위한 서류, 그리고 학생등록에 필요한 서류를 파견교에 제공해야 한다.
- 2.4. 양교의 학생 파견 시기는 3월 또는 9월로 한다.
- 2.5. 양교의 파견학생은 상호 간 동일 인원을 원칙으로 한다.

3. 교육과정 및 학사지도

복수학위과정에 참여하는 학생은 각 대학의 학위취득에 필요한 학점을 이수하고, 각 대학별 학칙에 의거한 제반 졸업요건 및 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

- 3.1. 동국대학교 일반대학원 국어국문학과 학위 수여 조건(동국대학교에 파견된 정치대학교 학생에 해당)
 - 3.1.1. 석사과정과 박사과정 모두 정규과정 두 학기(1년) 이상을 수학해야 한다.
 - 3.1.2. 수학기간 내 석사 12학점, 박사 18학점을 이수해야 한다.
 - 3.1.3. 석사과정 학생은 예비발표와 초록발표를 거쳐야 하며, 박사과정 학생은 그 외 심사제도가 있는 학술지(KCI= 등재지)에 적어도 한 편 이상의 논문을 발표해야 한다.
 - 3.1.4. 외국어 시험, 종합시험, 졸업이수학점, 졸업논문에 대한 사항은

동국대학교의 규정을 따른다.

3.2. 대만문학연구소 학위 수여 조건(정치대학교에 파견된 동국대학교 학생에 해당)

3.2.1. 석사과정과 박사과정 모두 정규과정 두 학기(1년)를 수학해야 한다.

3.2.2. 수학 기간 내 12학점 이상을 이수해야 한다.

3.2.3. 석사과정 학생은 적어도 한 차례 학술대회에 참가하고 보고서를 제출하며, 박사과정 학생은 적어도 한 차례 학술회의에서 논문 발표를 하거나 심사제도가 있는 학술지에 적어도 한 편의 논문을 발표해야 한다.

3.2.4. 외국어 시험, 종합시험, 졸업논문에 대한 사항은 국립정치대학교 문학원의 규정을 따른다.

3.3. 양교는 교육과정의 중요한 변경이 발생한 경우 즉시 상대교와 해당 학생에게 통보한다.

3.4. 학생은 반드시 상대 국가의 법률, 법규 및 상대교의 학생관리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4. 학위논문

4.1. 학위논문은 각 대학의 학칙에 따라 학위수여 논문 심사절차를 진행하며, 양교의 학사일정에 따라 완성한다.

4.2. 복수학위 취득을 위한 학위논문은 1편을 작성하되, 소정의 절차에 따라 양교에서 각각 심사한다.

4.2.1. 동국대학교의 경우, 복수학위 신청자의 학위논문 심사위원회는 협

정대학 교수를 포함하여 구성할 수 있으며, 협정대학 교수의 심사는 서면으로 대체할 수 있다.(동국대학교 학칙 제12장공동학위 및 복수학위 제67조 근거)

- 4.2.2. 정치대학교의 경우, 복수학위 신청자의 학위논문심사는 소정의 절차를 거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동국대학교의 논문심사 결과를 추인하는 것으로 심사를 대신할 수 있다.
- 4.3. 학위논문을 자국어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협정교의 언어로 된 요약본을 제출한다.
- 4.4. 각 대학별 학위취득 요건을 충족하면 양교의 총장은 문학 석·박사학위를 수여한다.

5. 등록 및 비용

- 5.1. 학생은 복수학위 취득을 위하여 석사과정과 박사과정 모두 두 학기를 파견교에서 수학하되, 학위취득 최종 학기에는 소속교에 등록하여야 한다.
- 5.2. 학생은 소속교에 등록금을 납부하고, 파견교에는 등록금을 납부하지 않는다.
- 5.3. 파견교는 학생이 숙소를 정하는데 적절한 안내와 도움을 제공하며, 숙소를 제공할 의무는 없다.
- 5.4. 등록금 이외 기타 비용(기숙사비, 논문심사비, 식비, 여비, 교재비, 교통비, 증명서류 비용, 비자 비용 등)의 지출비용은 학생 개인이 부담한다.

6. 부칙

- 6.1. 본 협정서는 양교의 대표가 서명한 날로부터 유효하며, 유효기간은 5년이며 자동으로 연장된다. 만일 한 학교에서 협정을 종료하고 싶으면 6개월 전에 서면으로 상대에게 통지해야 하며, 한 학교에서 의사표시를 하면 이 협정은 종료된다.
- 6.2. 본 협정서에 미진한 부분은 상호 합의를 통하여 해결하며, 보충 협의와 본 협의는 동등한 효력을 가진다.
- 6.3. 본 협정을 집행 중에 양교가 불예측한 요인으로 일어날 수 있는 쟁론, 이의 및 분규는 양교의 합의를 통해 해결한다.
- 6.4. 본 협정서는 한글과 중국어 각 2부로 하며, 양교가 각각 한글과 중국어 1부씩 보관하며, 동등한 효력을 가진다.

동국대학교
일반대학원 국어국문학과
학과장
김 춘 식



서명일: 2017. 12. 7.

국립정치대학교
문학원 대만문학연구소
소장
범 명 여



서명일: 2017. 12. 7.